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51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임호선 · 안도결 · 강경숙
장종태 · 문금주 · 김남희
백혜련 · 임미애 · 이춘석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② (생 략)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생 략) <u><신 설></u>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u>
7. (생 략)	<u>사항</u>
④ ~ ⑦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